

# 공인제도 운영 규정



#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 2017. 11. 28. 제 3차 이사회

개정 2019. 11. 13. 제10차 이사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협회 정관’ 제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공인제도 운영)** ① 협회는 국제경기연맹의 경기규칙에 의거한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

②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 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협회는 ‘협회 정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경기연맹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협회의 규정 제정)**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야구·소프트볼의 경기시설·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이하 “공인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 · 용품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시설 · 용품 공인 및 검정
2. 경기시설 · 용품의 타당성 검토
3. 경기시설 · 용품의 안전성 검토
4.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5.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7.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
8.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
9. 기타 경기시설 · 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 공학 · 생산 분야 전문가, 인증 전문가,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 · 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외부인사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회 직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협회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협회의 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3장 공인 심의

**제11조(공인대상)** 공인은 야구 · 소프트볼 종목의 경기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기준)** ① 협회는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적합성,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 공인 관련 기준은 국제경기연맹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제경기연맹 기준과 상이한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공인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실비, 공인료 부과 기준, 국제경기연맹의 규정 등 세부사항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에 대한 제척)** 협회의 임 · 직원 및 그 친족이 임 · 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협회로부터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회 공인의 제한을 받는다.

**제14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 · 용품 검사,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 공인)** 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에 대해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
  2.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
  3.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
  4.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
- 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경기시설의 설계단계부터 협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용품 공인)**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에 대해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용품의 국제경기연맹 기준 부합 여부
  2.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등록 유무, 자산 규모, 세금 납부실적,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 사업 실적 등)
- ②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협회는 국제대회,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료)** ① 협회는 경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 기준표를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인규정’의 별표로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비를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적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기한)** 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한은 2년으로 하되 야구·소프트볼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용품에 대한 공인기한은 1년 단위로 개신하되 협회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장 대회사용구

**제19조(공인)** 대회사용 공인구를 제조 판매하고자 하는 업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인제조 판매업자로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적용 및 의무)

1.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사용되는 대회사용 공인구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는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한 대회 사용 공인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한다.

### 제21조(공인의 신청)

#### 1. 공인신청조건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취급하는 제품이 제23조(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위탁 생산의 경우 공인구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 해외 공장으로부터 위탁 생산할 경우, 수입 후 15일 이내에 세관 직

인이 날인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신청절차 : 전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즉시 공문으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가. 공인신청공문

나. 대회사용구 공인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공장등록증 사본(위탁 생산의 경우 제외)

마. 공의 상세 제조공정(사진 및 설명 첨부)

바. 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원산지 포함) 및 단가

사. 모델별 협회 납품 가격표

아. 모델별 견본 2타(내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개 구 1개 포함)

<위탁 생산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가. 위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위탁 또는 납품 계약서 사본

다. 위탁 회사의 전년도 생산 실적

라. 위탁 회사의 공장등록증 사본

마. 위탁 회사의 공장책임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제22조(인정의 기준)** 협회는 제21조에 따라 신청된 공이 제23조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청자를 공인제조판매업자로서 승인할 수 있다.

## 제23조(제조기준)

### -야구-

- 신청한 공의 반발력이 반발 측정기구에 의한 검사결과 그 평균반발 계수가 0.4134에서 0.4374이내이어야 한다.
- 공의 고무심은 규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의 **솔기폭**은 16분의 6인치, 실밥 수는 108이어야 한다.
- 공의 **둘레길이**는 중·고등용은 9인치~9 $\frac{1}{4}$ 인치(229mm~235mm), 초등용은 8 $\frac{3}{4}$ 인치~9인치 미만(222mm~228mm) 이어야 한다.
- 공의 중량은 중·고등용이 5온스~5 $\frac{1}{4}$ 온스(**141.7g**~148.8g), 초등용은 4 $\frac{3}{4}$ 온스~5온스 미만(134.6g~141.7g) 이어야 한다.
- 전기 각호에 규정한 사항 이외는 야구규칙의 일반규칙을 적용한다.
- 공인구의 양모 함유량은 고교·대학 100%, 초등·중학·동호인은 50%(생산 과정 중 **10%** 이내의 오차 범위 인정)로 한다.

### -소프트볼-

- 공의 중심은 섬유질로 된 솜, 코르크의 혼합, 고무, 폴리우레탄 혼합 등 의 재질이어야 하며, 공의 곁면은 말가죽, 소가죽, 합성재질이어야 한다.
- 공의 둘레는 305mm(12inch)이며, 3mm의 오차(302mm~308mm)는 허용한다.
- 공의 중량은 178g에서 198.4g이내여야 한다.
- 공의 색상은 흰색 또는 노란 형광색이어야 한다.
- 실밥의 색상은 흰색 또는 빨간색이어야 하며, 실밥 수는 최소 88개 이상이고 2열로 박음질되어 있어야 한다.
- 공을 0.64cm 압축할 때 요구되는 하중이 경식볼(150kgf~170.1kgf), 연식볼(10kgf 이내) 이어야 한다.

※ 공인구 협회 각인 (예시)

- 협회 로고 각인
- 글씨체 : HY견고딕



**★OFFICIAL BALL★**

**KBSA**

**제24조(수시검사)** 협회는 제23조(제조기준)에 의거 공인구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수시 검사는 최초 공인 신청 시 제출한 샘플을 기준으로 하며, 협회 공식 전국대회에 납품된 대회사용 공인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 채취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검사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나, 문제 발견 시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비용은 공인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제25조(공인제조판매업자의 의무)**

1. 공인제조판매업자는 1년마다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인제조판매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제조판매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인제조판매업자는 제품의 하자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공인제조판매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공정 및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6조(제재)

1. 본 협회는 공인제조판매업자가 신청한 대회사용구가 상기 제23조의 제조 기준 및 제25조의 의무를 고의로 위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 한다.
2. 공인제조판매업자가 의도적으로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한다.
3. 제24조에서 정한 수시 검사의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협회는 공인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음 각 호에 의거, 제재를 결정하여 해당 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1) 공인 신청 시 규정 위반의 경우
    - ① 1차 적발 시 : 재시험 의뢰
    - ② 재시험 의뢰 결과, 불합격 시 : 당해 연도 공인신청 자격박탈
  - 2) 시즌 중 수시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의 경우
    - ① 1차 적발 시 : 제재금 1천만원이내
    - ② 2차 적발 시 : 공인 취소
4. 해당 공인제조판매업자는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제재 및 벌금부과)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 포장 상태 불량, 협회가 요구하는 표시 의무(원산지, 제조일자 등을 포함 하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제재한다.
6. 기타 부정한 방법(협회 임·직원 결탁 및 금품 제공 등)으로 공인 승인 절차를 진행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공인 제조 판매업자 의 공인을 즉시 취소하고 상기 4항의 제재를 받는다.

7. 공인을 취소당한 공인제조판매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인심사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에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제27조(이의 신청)** 공인심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하여 해당 공인제조판매업자는 제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공인의 효력기간)**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 제5장 배트 (목재, 비목재)

**제29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 (목재, 비목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함에 있다.

### 제30조(적용 및 의무)

1.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및 비목재 배트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협회에 야구로 등록된 고교·대학 및 실업팀 선수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목재배트만을 사용해야 하고 야구 초등·중학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소프트볼 선수 및 동호인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비목재 배트만을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징계한다.

## 제31조(공인의 신청)

1. 신청조건 : 배트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할 경우 제33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신청절차 :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목재 배트
        - 가. 공인신청공문
        - 나. 배트(목재) 공인신청서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라. 전년도 납세 증명원
        - 마. 국내 공장 등록증 사본

(배트가 국내위탁제조에 의한 경우는 위탁 공장의 등록증 사본)

      - 바. 제품별 품격 현황 및 견본 각 2본([일반 1, 커프트 1](#))
      - 사. 본 협회 납품 가격표
      - 아. 배트의 제조공정의 상세한 현황([배트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의 명세 포함](#))
      - 자. 사업자가 외국회사의 배트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회사에 대한 자료
      - 차.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독점 판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이 된 본사와의 계약서 ([한국 총판권](#))를 제출해야 한다. 단,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서 공인된 제품에 한한다. ([원본대조필 날인, 당해연도 내용 포함](#))
- 비목재 배트
    - 가. 공인신청공문
    - 나. 배트(비목재) 공인신청서

-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라. 전년도 납세 증명원
- 마. 제품별 품격 현황
- 바. 본 협회 납품 가격표 및 납품현황(년도, 생산, 판매, 재고수량)
- 사.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독점 판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혹은 국문 번역 계약서(한국 총판권)를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당해연도 내용 포함**)

**제32조(공인의 승인)** 사업자가 공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무처가 승인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공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승인은 공인심사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 **제33조(제조의 기준)**

-목재-

1. 표면의 마무리 : 방습(防濕)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塗布加工)은 허용되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樹脂)나 기타 일절의 경화제 및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표면의 도포 재료는 **투명(목재 고유의 색으로 흰색 불가), 빨간색과 구분되는 갈색, 짙은회색, 검은색**에 한하며,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또한 인가한 색 중 2가지색(투톤)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2가지색(투톤)으로 할 경우 배트의 손잡이 끝부분부터 45.7cm 이내를 경계선으로 한다. 배트의 소재가 메이플 등의 산공재일 경우 배트의 손잡이 부분에 한하여 반드시 나무의 결이 보여야 한다. 이 경우 배트의 끝부분에서 45.7cm~44.2cm를 경계선으로 한다.
3. 배트의 표면에는 배트의 모델명, 품번, 제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12cm이하이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2cm 이하 가로 2cm 이하이어야 한다.

4. 또한 상표 또는 기타 문자 등을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45.7cm 까지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링은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폭은 3.5cm 이하로 한다.

5. 상기 1,2,3,4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규칙(3.02)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3.02 주요내용

- 배트는 곁면이 고른 둥근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 가장 굵은 부분의 지름이 2.61인치(6.6cm) 이하, 길이는 42인치(106.7cm) 이하여야 한다.
- 배트는 하나의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접합배트는 별도의 승인없이 사용 불가)
- 커프트 배트(끝부분을 움푹하게 도려낸 방망이)는 도려낸 부분의 깊이가  $1\frac{1}{4}$ (3.2cm) 이하, 지름은 1~2인치(2.5~5.1cm) 이내로 해야 하며, 움푹하게 파낸 단면은 둥글어야하고, 다른 물질을 붙여서는 안되며 소재를 도려낸 것으로 그쳐야 한다.

-비목재-

1. 배트 33인치 기준 배트의 스위트 스팟(Sweet spot) 지점이라 할 수 있는 152mm에 1.21mm의 압축 후 하중 측정한 값이 아래 기준표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알루미늄	복합재(카본)
초등학교	2,600N	2,990N
중학교 / 생활체육	3,400N	4,100N

2. 배트에 표시되어있는 사양이 아래와 같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제조되어야 한다.

- 길이 : ±0.2in (±5.1mm)
- 무게 : ±0.7oz (±19.8g)
- 배럴지름 : + 1mm

3. 캡과 그립을 제외하고 배트의 기본 배럴 외에 사용자가 탈부착이 가능한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 안된다.

4. 상기 1,2,3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 규칙(3.02)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3.02 주요내용

- 굵기 : 2.61인치(6.6cm)이하
- 길이 : 42인치(106.7cm)이하

※ 소프트볼 배트의 경우 국제연맹(WBSC 또는 ISF)에서 인증한 배트에 한해 사용. (2020년부터 시행/ 2017년 감독자회의 요청사항)

### 제34조(공인의 효력 및 의무)

- 목재-

1. 사업자는 매년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시합용 배트에 대하여 제36조의 공인 인(印)을 받아야 하며 공인 인(印)을 받은 배트는 협회와 협의된 판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배트의 공급 수량 부족 또는 불량 배트 등의 사유로 구입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적 사유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할 사유가 발생 될 경우 즉시 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야구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인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국제대회에서의 사용을 위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비목재-

1. 사업자(제작업체 또는 수입총판업체만 가능)는 공인받고자 하는 모델별로 1회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동일모델이라도 in, oz, 배럴지름이 다를 경우 모든 **시험성적서** 제출.

ex) 동일모델 32in/27oz, 33in/28oz 경우 각각의 시험성적서 제출  
-한번 공인 받은 배트는 3년간 공인효력, 3년 이후 재공인 미 신청 시 사용 금지

2. 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용품시험소 테스트를 통과한 배트 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비용 사업자 부담)

3.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협회가 제공한 공인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① 공인신청 테스트 시점 기준으로 제작된 배트에 한에 스티커 부착(배트 제작 재원(수량) 제출) ② 공인 승인 이후 제작 시 공인 인(印) 각인 제작**

\* 동일모델 제품일지라도 공인승인 이전 제작된 제품 사용불가(제품 제작년도 기준)

4.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5조(공인의 취소)

1. 본 협회는 상기 제31조에 의해 신청한 배트가 제33조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제3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을 취소당한 사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배트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6조(공인 마크 표시)

1. 협회는 공인사에서 제조한 배트 중 경기용 배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협회를 상징하는 별도의 마크를 부착한다.
2. 공인 마크는 제33조에서 언급된 부분을 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공인 마크가 없는 배트를 협회 주최대회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본 협회는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경기 진행(승패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 규정에 따른다.

### - 목재배트

가. 국산 : 공인마크 부착필수

나. 외산 : 공인마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가능

- 비목재배트 : 국, 외산 구분없이 스티커 혹은 배트 각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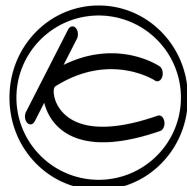
※ 목재 배트 공인 인(印)

- 크기 : 가로 X 세로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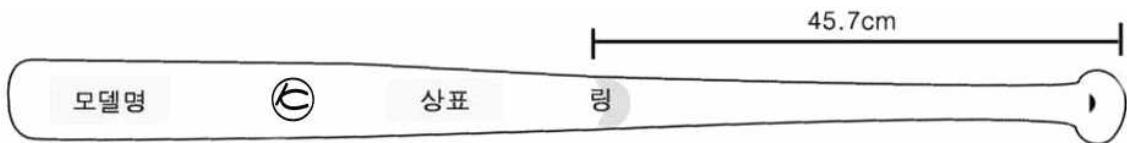
- 색상 : 상품표시와 동일한 색으로 소인한 자연색,

흰색, 은색, 금색, 검정색 중 한 가지 색으로 한다.

- 위치 : 상표로부터 배트 앞쪽(지름이 가장 굵은 부분)



으로 2cm 떨어진 지점



※ 비목재 배트 공인 인(印)

- 크기 : 가로 5cm, 세로 2cm
- 색상 : 검정색 (제공된 이미지)
- 위치 : 손잡이 부분 상단 5cm



\* 협회 공인신청을 하기 위해 테스트 기간에 제작된 배트에 한하여 스티커 제공

(공인 이후 제작 시 공인 인(印) 각인 후 제작)

\* 공인 승인 이전 제작된 제품은 사용불가 (서류제출 시 최초제작 및 수량 파악)

### 제37조(공인의 효력 기간)

1.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비목재 배트는 3년)
2. 협회의 마크가 표시된 시합용 배트에 대하여는 공인이 취소된 회사의 제품 일지라도 제37조 제1항의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배트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취소된 공인사는 취소된 시점부터 3년간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 제6장 사후 관리

**제38조(결과 공개)** 협회는 공인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 및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

2호서식에 의거하여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
2. 공인 기간
3.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사무소 주소
4. 공인료

**제39조(시정요구)** ① 협회는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문제점 보완에 대한 협회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협회는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40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연맹의 '공인규정'에 우선하며, 연맹의 '공인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이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야구·소프트볼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개선요구)** 협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연맹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규정의 제·개정)** ① 협회가 ‘공인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제경기연맹의 공인  
관련 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인규정’은 협회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  
야 한다.
- ③ 체육회는 협회 ‘공인규정’ 승인을 위해 소관 부서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공인료 기준표

- ▶ 공인료 기준 의결 회의: 2019년도 10차이사회 (2019. 11. 13.)
- ▶ 공인료 기준표

공인품목	공인료 (단위: 천원)	공인료 산출내역 <small>주)</small>	비고
야구공	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의비 200,000원</li><li>▪ 검사비 800,000원</li><li>▪ 공인사 홍보비 5,000,000원</li><li>▪ 사업지원비 4,000,000원</li></ul>	
소프트볼공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의비 100,000원</li><li>▪ 검사비 100,000원</li><li>▪ 공인사 홍보비 2,000,000원</li><li>▪ 사업지원비 800,000원</li></ul>	
야구배트 (목재)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의비 50,000원</li><li>▪ 검사비 50,000원</li><li>▪ 공인사 홍보비 2,000,000원</li><li>▪ 사업지원비 900,000원</li></ul>	
야구배트 (비목재)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의비 50,000원</li><li>▪ 공인사 홍보비 100,000원</li><li>▪ 사업지원비 150,000원</li></ul>	

주: 단체에 따라 산출내역의 항목 추가 가능

### [별지 제2호 서식]

## 2000년도 공인 결과

- ▶ 공인 결과 의결 회의: 제○차 ○○○ 회의(2○○○. ○. ○○.)
  - ▶ 공인 내역

주: 1. 식별정보는, 용품의 경우에는 제품 모델명 및 모델번호를 기입하고,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2. 용품의 경우 생산업체에 대해 적는데 “업체명(대표자명)”을 기입하고,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적는데 “관리주체단체명(단체장명)”을 기입합니다.